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58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김태선·허종식·이학영
한준호·어기구·민병덕
김남국·한민수·김주영
박 정·허 영·김영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검정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를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춘 자에게”로, “대행하게 할”을 “위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된 기관”을 “위탁을 받은 자”로, “검정대행기관”을 각각 “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행”을 “업무를 수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항”을 “제1항”으로, “지정 기준”을 “인력 및 설비 요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정의 기준”을 “위탁의 절차”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의 제목 중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검정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각각 “위탁”으로 한다.

제27조의2 중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검정업무의 위탁”으로 한다.

제27조의3 중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은 이 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2(<u>검정대행기관의 지정</u> 등)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u>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u>검정대행기관</u>”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u>검정대행기관</u>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u>검정대행기관</u>의 검</p>	<p>제11조의2(<u>검정업무를 위탁</u> 등)</p> <p>① ----- ----- ----- -----<u>있</u> <u>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u> <u>력 및 설비를 갖춘 자에게</u>---- -----<u>위</u> <u>탁할</u>-----.</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 <u>위탁을 받은 자</u>-----<u>검정기</u> <u>관</u>----- -----<u>검정</u> <u>기관</u>----- ----- -----.</p> <p>④ ----- -----<u>검정기관</u>-----</p>

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대행한 경우

2. (생략)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

⑤ -----검정기관-----

-----.

1. -----

-----업무를 수행-----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인력 및 설비
요건-----

⑥ -----위탁의 절차-----

-----.

제11조의3(검정업무의 위탁 취소 등) ① -----검정기관-----

-----위탁-----

-----.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생략)

② (생략)

제27조의2(청문) 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탁-----.

1. -----

-----위탁-----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청문) -----

-----검정업무의 위탁-----

제27조의3(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

-----검정기관-----

-----.